# 건강증진형 보험상품·서비스 활성화 방안

2019. 7.

금융위원회 · 보건복지부 · 금융감독원

### I. 추진배경: 건강증진형 보험상품·서비스 환경 변화

- □ 일본, 중국 등 주요 국가들은 고령화에 따른 의료비 부담완화를 위해 예방목적의 건강관리서비스업 활성화를 지원
- □ 금융위의「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개발·판매 가이드라인」발표 ('17.11월) 이후, 다양한 보험상품이 출시되었으나, 보험회사가 보다 적극적으로 상품·서비스 제공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
  - 보험회사가 제공할 수 있는 건강관리서비스의 범위 및 방법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, 보험회사는 이를 장애요인으로 인식

#### <국내 건강관리형 보험상품 사례>

- ◇ [생명보험] 걷기 등 건강활동 입력시 보험료 10%까지 할인 (총 4종)
- ◇ [손해보험] 식사, 운동 등 건강활동 입력시 보험료 할인 및 포인트 증정, 생활습관 개선 위한 코칭서비스 및 맞춤형 건강정보 제공 (총 9종)
- □ 이에 복지부는 「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및 사례집」을 통해 '의료행위'와 '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'간 구분을 명확화('19.5월)
  - 4차산업 혁신기술 등과 맞물려 건강관리서비스가 활성화될 수 있는 제도적 기틀이 마련된 것으로 평가(헬스케어 업계)

<복지부의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및 사례집 주요내용>

- ◇ 비의료기관이 제공 가능한 건강관리서비스 제시
  - (예) 웰니스 기기를 통한 건강정보의 확인 및 점검, 운동·영양·수면 등 일상적 건강증진활동을 돕는 것은 비의료적 상담·조언
- ◇ 고혈압, 당뇨병 등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비의료적 상담·조언도 허용되어 헬스케어 서비스 활성화의 기틀이 마련
- ⇒ 복지부의 가이드라인을 기초로, **혁신적인 건강증진형 보험상품**· **서비스 출시를 지원**하기 위한 **정책방안을 적극 모색**할 필요

### Ⅱ. 건강증진형 보험상품서비스 활성화 방안

#### 1. 보험회사의 건강관리서비스업 진출 지원

- □ (**연왕**) 보험회사들은 헬스케어 업체와의 위탁계약 등 **외주형태로만**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여 새로운 상품 및 서비스 개발에 하계
  - 그간 비의료기관의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범위가 모호함에 따라, 보험회사는 의료법 저촉 우려 등으로 서비스 직접 제공을 기피
- □ (개선) 복지부의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에 부합하는 건강관리서비스는 보험회사도 직접 제공할 수 있도록 단계적 허용
  - [1단계] 기존 보험가입자 대상 건강관리서비스는 보험회사의 부수업무\*로 인정
    - \* 보험회사는 경영건전성, 계약자보호, 금융시장 안정을 해치지 않는 경우 사전신고를 거쳐 보험업에 부수하는 업무 영위 가능(보험업법 제11조의2)
    - 보험회사가 부수업무 가능여부 질의시 적극적으로 유권해석 하고, 사전신고시 최대한 신속히 수리
  - [2단계] 보험가입자가 아닌 일반 대중 대상 건강관리서비스는 1단계의 영향·효과를 면밀히 분석한 이후, 부작용이 없는 경우 허용 검토

#### <일본의 보험회사 건강관리서비스 부수업무 인정 사례>

- ◇ 일본 보험업법(제100조)은 보험회사가 수행 가능한 업무를 열거
  - \* ①고유업무(보험 인수), ②부수업무, ③법정타업(유가증권관련업, 금융관련업무, 생명보험회사에 의한 보험금신탁업무 등) ④기타 법률에 의해 수행하는 업무
- ◇ '17년 일본 금융청은 보험업과의 리스크 동질성, 업무비중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, 닛폰생명의 건강증진컨설팅서비스를 부수업무로 인정

#### 2. 「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개발·판매 가이드라인\*」 개정

- \* 이하 보험상품 가이드라인
- □ (현황) 현행 보험업법령 및 보험상품 가이드라인에 따를 경우,
   보험회사는 3만원 초과 건강관리기기를 직접 제공할 수 없어,
   다양한 상품 및 서비스 개발에 한계
  - 보험업법령은 계약 체결시 3만원 초과 금품 제공을 금지하고 있으며,
    - 보험상품 가이드라인은 소비자에게 건강관리기기를 직접 제공할 수 없고\* 그 구매비용만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점에 기인
      - \* 기기 제공은 파손/분실 및 중도 해지시 기기 회수 등 관련 민원.분쟁 우려로 제외
- □ (개선) 건강증진 효과 입증시, 보험회사가 3만원 초과 건강관리 기기의 직접 제공을 허용
  - 건강증진 효과를 통계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기기는 금품이 아닌 기초서류에서 정한 보험료 할인(선지급)으로 유권해석
  - 보험회사가 건강관리기기를 직접 제공 가능하도록 보험상품 가이드라인 개정
    - 다만, 고가의 웨어러블 기기 지급 등 보험회사간 판촉경쟁에 따른 모집질서 문란도 우려되므로 금액 하도를 설정\*
    - \* (예) 우선은 10만원 이하의 기기만 제공하고 영향 분석 등을 통해 점진적 확대

#### < 보험업법령 및 보험상품 가이드라인 관련 규정 >

보험업법 제98조(특별이익의 제공 금지)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<u>다음 각 호의 어느</u>하나에 해당하는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

- 1. 금품(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품은 제외한다)
- 2. 기초서류에서 정한 사유에 근거하지 아니한 보험료의 할인 또는 수수료의 지급
- 3. 기초서류에서 정한 보험금액보다 많은 보험금액의 지급 약속

보험상품 가이드라인 제5조(보험편익의 종류) ①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보험편익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- 1. <u>건강관리기기(명칭과 종류를 불문하고 물리적 실체를 갖춘 기기를 모두 포함하며</u> 이하 '기기'라 함) 구매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의 보전
- 2. 보험료 할인 또는 환급 3. 보험가입금액의 상향 또는 보험금의 증액
- 4. 건강 관련 서비스의 제공(의료법 등 현행 법령상 허용된 범위에 한함) <중략>

#### 3. 관련 금융법령 개정 및 복지부와의 협조 강화

- □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목적의 건강정보 수집·활용 범위 명확화
  - (**현황**) 현행 신용정보법령은 **보험회사의 건강·질병정보 이용을** 보험업으로만 한정
    - 이에, 보험회사는 건강·질병정보를 활용해 소비자에게 필요한 건강관리서비스를 안내 및 제공하기 어려운 상황
    - ※ 복지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를 경우, 보험회사는 본인 동의를 전제로 개인의 건강·질병정보를 활용해 건강관리서비스 안내·제공 가능
  - (개선)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건강정보의 수집 및 활용범위를 명확히 하는 법적근거 마련(신정법 시행령 개정 추진)
    - 다만, 보험회사의 건강관리서비스업 영위와 관련하여, 우려 사항을 일정 부분 제한\*하여 허용하는 방안도 추가 검토
    - \* 건강관리서비스업을 통한 보험업(보험인수 및 보험금 지급 등) 정보 활용 제한 등

#### < 신용정보법령 관련 규정 >

신용정보법 제16조(수집·조사 및 처리의 제한) ② 신용정보회사등이 <u>개인의 질병에</u> 관한 정보를 수집·조사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려면 미리 제32조제1항에 따른 해당 개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으로만 그 정보를 이용하여야 한다.

신용정보법 시행령 제13조(수집·조사 및 처리의 제한) 법 제16조제2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"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각 호의 자가 개인의 질병에 관한 정보를 그 업무와 관련하여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. 1. 「보험업법」에 따라 보험회사가 수행하는 보험업

- □ 복지부 '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' 지속 개선
  - (**연왕**) 현행 복지부 가이드라인에서도 건강관리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허용 여부가 모호한 내용이 일부 존재한다는 지적
  - (개선) 복지부의 유권해석 시스템\*을 통해 신속히 불명확성을 해소하고, 향후 가이드라인 및 사례집을 지속 보완
    - \* 비의료기관에서 제공하려는 서비스가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복지부에 유권해석 신청시, 법령해석위원회 검토를 거쳐 약 37일 내 회신 예정 (법령해석위원회 회부 불필요 시 20일 내 회신)

### Ⅲ. 기대효과

- □ (소비자) 건강관리 노력을 통해 '건강수명'을 연장하고 보험료 할인 등 금융비용을 절감
- □ (**보험회사**) 보험계약자의 **질병발생 확률**, 조기 사망확률 등 사고 위험이 낮아지면서 **손해율이** 하락
  - 건강관리서비스업 진출, 신상품 개발 등을 통해 **보험산업 성장 가능**
- □ (국민경제) 국민의료비 절감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 및헬스케어 산업 발전에 따른 일자리 창출 가능
  - \* 보험연구원 연구결과 : 당뇨예방 노력을 30년간 지속시 사회적 편익은 비용의 약 2.5배
  - \* 헬스케어 산업의 취업유발계수('14년, 한은) : <u>19.2명/10억원(全산업 평균 12.9명)</u> 헬스케어 산업의 고용유발계수('14년, 한은) : 16.7명/10억원(全산업 평균 8.7명)

### Ⅲ. 향후 계획

- □ 보험회사의 건강관리 서비스업 진출 지원
  - 복지부 가이드라인, 해외사례(일본 등)를 참고하여 보험가입자 대상 건강관리서비스업의 부수업무 허용 추진('19.하반기)
  - 일반인 대상 건강관리서비스업 허용 여부 검토('20.하반기)
- □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가이드라인 개정
  - 보험회사, 소비자 의견 등을 수렴하여 **가이드라인 개선사항**을 우선 마련하고, 개선안 공고(20일) 등을 통해 최종 시행('19.11월)
  -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개발 지원을 위해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은 법규로 반영 추진('20년 중)
- □ 관련 금융법령 개정 및 복지부와의 협조 강화
  - 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 추진('20년중)
  - 가이드라인 및 사례집 등을 보완(계속)

#### 참고 1

#### 건강증진형 보험상품·서비스 예시

### ① 건강관리기기 제공을 통한 혁신 보험상품 출시

#### < 사례 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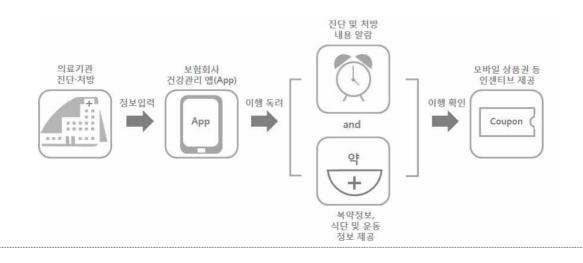
- ◇ (현행) 3만원 이하의 각종 건강관리기기만 제공가능하여, 보험회사는 걷기 목표 달성시 보험료 할인이 되는 보험상품만 출시하는 경향
- ◇ (개선) 3만원을 초과하는 정교한 건강관리기기(치아, 심박수 측정 등)
  제공으로 다양한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개발 촉진



#### ② 보험회사 기존 계약자 중 만성질환자 상담·조언 서비스 제공

#### < 사례 > \_\_\_\_

- ▶ 당뇨병 환자가 전용 앱(App)에 의료기관의 진단 및 처방<sup>\*</sup> 내용을 기록하고 이행을 독려하며 이행 정도에 따라 인센티브 제공
  - \* 3개월 주기로 의료기관을 내방하여 혈액검사 및 의료인의 상담 필요
- ▶ 식단 사진을 판독하여 영양소 및 칼로리를 분석하고, 사전에 입력된 이용 자의 건강정보를 바탕으로 건강상태에 최적화된 식단 및 영양정보 제공





### 고혈압·당뇨병 환자 대상 건강관리서비스 예시

\*복지부 '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및 사례집(1차)' 中

### ① 혈압·혈당의 측정 및 관리

구 분	가능한 행위	불가능한 행위
혈압·혈당 측정 및 기록	· 개인용 의료기기를 통해 환자 자가측정 후 기록	· 비의료기관이 환자의 혈압을 직접 측정 후 기록
혈압·혈당 관리 및 목표수준 설정	·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제시한 범위의 정상/주의/위험 판단 및 해당범위 내 목표 설정 · 환자가 의사의 처방에 따라 스스로 설정한 목표 수준에 따른 정상/주의/위험 알람 · 주기별(예:7일) 혈압:혈당 수준을 모니터링하고, 평균치보다 벗어난 경우 '주의필요' 등 안내	· 수치에 근거하여 고혈압·당뇨병 환자로 진단 · 공신력 있는 기관의 지침 및 의사의 처방에 근거하지 않은 비의료기관의 자체적인 정상/ 주의/위험의 판단 및 목표수준 설정

### ② 고혈압 관리를 위한 상담 및 조언

구 분	가능한 행위	불가능한 행위
고혈압 예방 및 관리	·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제시하는 고혈압 예방·관리 사항 등 정보 제공 및 안내 · 병원 내원일 알람 서비스	· 상황에 따른 혈압 목표 · (약사의사가 아닌 사람이) 약물에 대해 설명을 하는 것
운동 및 식이, 생활습관	· 운동요법의 효과, 방법 등 안내 · 식이요법의 효과, 방법 등 안내 · 금연, 금주 등 생활습관 개선 상담 및 조언	· 급격한 혈압강하.상승시 조치 방법 등 의료적 상담

### ③ 당뇨병 관리를 위한 상담 및 조언

구 분	가능한 행위	불가능한 행위
당뇨병 예방 및 관리	·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제시하는 당뇨병 예방.관리 사항 등 정보 제공 및 안내 · 병원 내원일 알람 서비스	· 상황에 따른 혈당 목표 · (약사의사가 아닌 사람이) 약물에 대해 설명을 하는 것
	· 혈당 수치를 주기적으로 점검 하고, 위험요인 발생시 병원 내원 등을 권고하는 서비스	
	· 운동요법의 효과, 방법 등 안내	
운동 및 생활습관	· 금연, 금주 등 생활습관 개선 상담 및 조언	
	· 당뇨병 환자가 주의해야 할 일반적인 식이요법 및 식품군 등에 대한 설명	· 위험한 혈당 수치별 당질 섭취 기준 등 의료적 처방에 가까운 행위
식이관리 서비스	· 다양한 식단을 제시하고 환자가 선택가능하도록 하는 행위	
1516.51.51	· 의사의 처방.권고 기준 하에서 환자에게 식단을 구성하여 주는 행위	
	· 환자가 원하는 식단(예: 저염 식단)을 구성하여 주는 행위	

## 참고 3 국내 보험사의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현황

### □ 손해보험사

회 사	상품명	주요내용
롯 데	힐링케어 건강보험 등 *다수 상품에 부가 가능	- <b>헬스관리 서비스</b> : 건강상담, 주요 전문의 예약, 해외 여행시 현지 긴급 의료지원, 암 전문 케어 서비스 등
삼 성	건강을 지키는 당뇨케어, 천만안심	- <b>당뇨관리 코칭서비스(마이헬스노트)</b> : 당뇨병 진단시 당뇨병관리 소모품 지급 및 당뇨관리 1:1 코칭서비스 등
현 대	퍼펙트플러스 종합보험 등 *다수 상품에 부가 가능	- <b>하이헬스챌린지</b> : 생활습관 개선 위한 코칭서비스, 리워드 프로그램 <sup>*</sup> , 건강상태·생활습관 고려한 맞춤형 건강정보 제공 * 식사, 운동 등 건강활동 입력, 1일 6,500걸음 이상, 건강정보 읽기 등 건강미션 달성시 포인트 증정(포인트로 상품권 등 구매 가능)
D B	프로미라이프 건강해서참 <del>좋은</del> 건강보험	- 건강나이에 따른 등급별 보험료 차등화 : 실제·건강 나이 차이별 0등급(실제나이 동일)~5등급(실제나이 ~5)으로 구분하여 일부 보장의 보험료(암, 뇌, 심장 질환 위주) 할인 * 건강나이는 흡연, BMI지수, HDL콜레스테롤, 혈청지오티 (AST), 공복혈당, 연령 총 7개 요소를 기초로 산출
AXA	AXA생활비 받는 건강보험	<ul> <li>보험료 할인 : 월평균 걸음수 8천보 이상시 할인대 상 담보의 다음달 보험료 5% 할인(월간)</li> <li>건강관리 서비스 제공</li> <li>* 건강관련 서비스는 1년간 제공</li> </ul>
	당뇨이기는건강보험	- 보험료 할인: BMI 25미만 기준 충족 시, 할인신청일 다음 달 회차부터 1년간 할인 대상 담보 10% 할인 (기준 충족 시, 보험기간 동안 보험료 할인 적용)

회 사	상품명	주요내용
	Chubb 건강증진형 3대질병보장보험	- 보험료 할인 : 목표 걸음수 달성(10개월간 일평균 5,000보)시 최대 10% 보험료 할인*(연간) * 일평균 10,000보 이상 : 할인율 10% 일평균 7,000보 이상 ~ 10,000보 미만 : 할인율 7% 일평균 5,000보 이상 ~ 7,000보 미만 : 할인율 5%
ACE	Chubb 다이렉트 당뇨케어 3대질병보장보험	- 당뇨관리 서비스 : 보험가입시 보험료 할인 또는 쿠폰제공 서비스 중 한가지 선택, 당뇨관리점수*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 * 당뇨관리 App을 설치시 2만원 상당의 쿠폰 제공, App을 통한 당뇨관리노력에 따라 당뇨관리점수 부여 ① 걷기운동 : 1일 3,000보 이상 달성시 1일당 25점 ② 식단조절 : 식단 입력시 1일당 25점 ③ 혈당측정 : 혈당 데이터 입력시 1일당 25점 ④ 온라인코칭 : 당뇨관련 일일 컨텐츠 확인시 1일당 25점
		<ul> <li>(택1)보험료 할인 : 당뇨관리점수(11개월간 월평균 1,000점 이상) 달성시 보험료 10% 할인(연간)</li> <li>(택2)쿠폰제공 서비스 : 당뇨관리점수(매3개월간 월 평균 1,000점 이상) 달성시 3개월마다 1만원, 매년 마다 3만원 상당의 쿠폰 제공</li> </ul>

### □ 생명보험사

구 분	상품명	주요 내용
ABL	캐시워크 캐시백* (인터넷보험 가입고객)	- 걷기목표(한 달에 15만보) 달성시 포인트 지급
흥	(무)걸으면베리굿 (Vari-Good) 변액종신보험 (저해지환급형)	- 걸음 수에 따라 보험료의 최대 10%까지 환급
오랜지 라프	무배당 라이프케어 CI종신보험 등 (닐리리만보-앱)	- 걷기 목표 달성시 만보달성 축하금 지급
AIA	(무)100세시대걸작건강 보험바이탈리티통합형1종	<ul> <li>걸음 수에 따라 연간 바이탈리티 등급을 적용, 등급에 따라 年 단위 보험료 할인율 변동</li> <li>주 단위 걷기목표(미션) 달성시 통신요금 할인, 각종 쿠폰제공</li> </ul>